

이사회 운영규정

주식회사 **광주신세계**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권 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 (구 성)

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하며,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.

제5조 (의 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단,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.
-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이사 아닌자의 출석)

-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 의결권을 가진다.
- ② 이사회 또는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장 회 의

제7조 (종 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, 3째주 금요일에 개최한다. 단, 필요시에 대표이사가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의장직무 대행의 순위에 따른다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 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 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정관에 의거 1주간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0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 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 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,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4장 부의사항

제11조 (부의사항)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 (상법 제362조)
- (2) 주주총회 의장의 결정 (상법 제366조의2)
-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 (상법 제447조의2)
- (4) 자본의 감소 (상법 제438조)
- (5) 재무제표의 승인 (상법 제447조)
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(상법 제517조, 522조, 530조의2, 519조)
- (7) <삭 제>
- (8)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(상법 제374조)
- (9)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(상법 제374조)
- (10) 이사의 선임 및 해임 (상법 제382조, 385조)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(상법 제417조)
- 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(상법 제400조)
- (13) 주식배당 결정 (상법 제462조의2)
- 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(상법 제340조의2, 상법 제542조의3)
- (15) 이사의 보수 (상법 제388조, 제415조)
- (16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, 이전, 폐지 (상법 제393조 제1항)
- (3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(상법 제527조의2,3, 상법 제530조의11)
- (4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(상법 제526조 제3항, 제527조 제4항)
- (5) 기타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(상법 제416조)
- (2)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(상법 제462조의3)
- (3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(상법 제469조)
- (4) 준비금의 자본전입 (상법 제461조 제1항)
- (5) 전환사채의 발행 (상법 제513조)
- (6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(상법 제516조)
- (7) 10억원 이상의 기부 단, 긴급재난구호 관련 기부금은 선집행 후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, 희망배달캠페인 운영 기금은 연간 계획 이사회 보고로 같음한다.
- (8)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

4. 이사, 이사회, 위원회등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대표의 결정 (상법 제389조)
- (2)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승인 (상법 제397조)
- (3)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(상법 제398조)
- (4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 (상법 제393조)
- (5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(상법 제393조)
- (6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(상법 제393조)
- (7) 기타 이사 및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

5. 기타 사항

- (1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, 공시규정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한다.
- (2) 상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, 공정거래법, 공시규정사항은 별첨 참조

제5장 소위원회

제12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제13조 (감사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관련법규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.

제14조 (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관련법규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-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.

제15조 (기 타)

이사회는 관계법령에 의거 필요에 따라 상기 나열한 위원회 이외에 기타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6장 기타사항

제16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7조 (시행일)

상기 이사회 규정은 2001년 7월 이사회부터 시행토록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